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9
----------	-----

2023. 6. 23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조성태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6월 9일

-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조성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·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,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결과 공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(안 제8조)
-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설치 조항을 삭제함(현행 제18조)
-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,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)
-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(현행 제2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「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는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,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,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.
-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조례에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활용이 미비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8조는 “의견수렴 결과” 를 “의견과 반영결과” 로 수정하여 결과 공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.
- 현행 제18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, 정책수립,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2019년 이후로 구성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9조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, 단체에 포상

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규정을 두고도 실행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의견수렴 결과”를 “의견과 반영결과”로 한다.

제18조를 삭제하고, 제19조를 제18조로 하며,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포상)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·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결과 공개)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<u>의견수렴 결과를</u>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결과 공개) ----- ----- <u>의견과 반영결과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8조(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설치) ① <u>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, 정책수립,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(이하 “연구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한다.</u></p> <p>2. <u>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분야 전문가, 사회단체관계자 등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연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,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</u></p> <p>④ <u>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예산담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<p>당관실 담당사무관이 된다.</p> <p>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개선방안</p> <p>2.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적인 홍보 및 활성화 방안</p> <p>3.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</p>	
<p><신 설></p>	<p>제19조(포상)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·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19조 (생 략)</p>	<p>제18조 (현행 제19조와 같음)</p>
<p>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(이하 “주민참여예산기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이 조에서 “예산과정”이라 한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청회 또는 간담회
2. 설문조사
3. 사업공모
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
1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
2.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
3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포상금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19조(포상금)

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·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 5년간으로 함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

나. 추계 결과 : 10,000천원

- 포상금 : 10,000천원(2,000천원/매년)
 - 주민참여예산 제안자(참여인센티브) : 5,000원 * 100명 = 500,000원
 - 주민참여예산 채택자(성과인센티브) : 50,000원 * 30명 = 1,500,000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출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포상금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재원 조달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도비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